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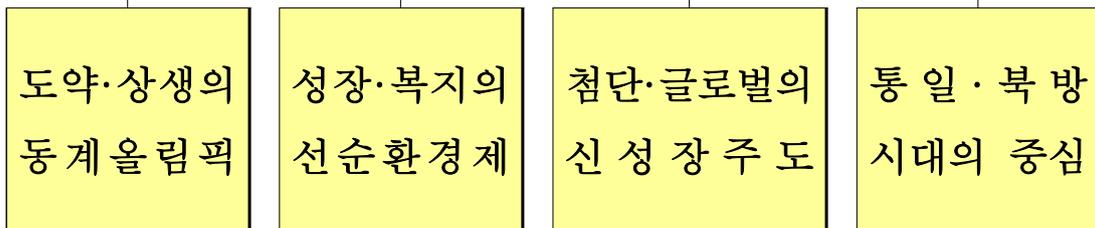
1.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

도정 비전

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

도정 방침

- 인간의 존엄
- 지역의 가치
- 평화와 번영



2017년도 도정방향

- 2017년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, 문화올림픽 준비와 세계에 강원도를 알리는데 주력하고,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강원경제 부흥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
 -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스마트 관광, 숙박, 교통, 음식,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를 집중 구축
 -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늘길·바닷길·땅길 인프라 사업에 주력하고, 이와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추진
 - 밖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, 안으로 도내 경제 주체의 조직화·글로벌화와 함께 일자리, 강원상품권 등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
 - 아울러, 지역 경제성장·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인 군사·산지·환경 등 이중·삼중의 각종 규제 개혁에 매진

-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5대 중점 추진전략 설정
 - 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
 - ②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경제
 - ③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경제 신동력 마련
 - ④ 동북아시대 대비 올림픽 로드 구축
 - ⑤ 함께 만들고 누리는 행복강원 실현

- 이러한 도정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정교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프로젝트 가시화
 - ▶▶ 「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」를 실현해 나가고자 함

2. 2017년 재정운영 방향

대외여건

- (경제환경)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2016년 2.6% 성장 후,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
 - * (실업률) 3%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
 - * (물 가) 1.5%의 낮은 상승률 (수 출) 1.9%의 낮은 증가율▶ 강원도민의 살림살이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(국제환경)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사드(THAAD) 배치와 관련 국내 찬반 논란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▶ 중국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관광객 및 투자 유치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

대내여건

- (올 림 픽) 리우올림픽 이후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평창으로 쏠림과 동시에 도정은 올림픽 준비 시스템으로 본격 전환

- (행정환경) 정부를 중심으로 행정 환경은 「변화와 혁신」의 기조 아래 시장 경제 중심의 성과 체계로 더욱 빠르게 전환

- (재정환경) 세입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세출은 저출산·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과 올림픽,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상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 → 재정 부족액 최소 2,000억원 가량 발생 예상
 - ▶ 특히, 연말 대선정국과 올림픽이 맞물려 도정은 역대 가장 역동적이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

□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주요사업

- 동계올림픽 붐 조성, 일자리 창출, 저출산·고령화, 민선6기 공약사업 등 집중 투자
- 실국별 예산신청 『한도제』 지속 추진으로 불요불급사업 예산부서 심의 검토·조정
-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사 없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·보조금 사업 미반영
- 내년도 올림픽 집중투자로 인한 계속사업 소외, 민원발생 우려 ⇒ 금년도 수준 전액 반영

《 분야별 주요사업 》

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시설투자

- 시설분야 3,342억, 홍보분야 304억, 행사·축제 분야 184억원, 기타 319억

② 농업분야 고소득 농어업, 잘사는 농어촌 건설

-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51, 새농어촌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 12
-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98,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41
- 농업기술원 이전조성 91, 연안침식방지 44,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지원 4
- 어업용 면세유 지원 18, 속초 붉은 대게 축제 지원 0.9

③ 소방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

【 소방분야 】

- 소방청사 증개축(강릉,원주 소방서, 센터 4개소) 166, 노후 소방차량 보강 162
- 소방헬기구입 및 임차 104,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30
-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9, 노후 구조·통신·구급장비 보강 74

【 안전분야 】

-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70,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394
- 제설창고 신축(횡계) 20,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7
-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(5개소) 21, 방호울타리 개선 18

3.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1 행사·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◆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·낭비성 행사축제는 기본적으로 억제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·축제는 육성 지원
 - ※ 정부 승인 국제행사 및 대표 지역축제, 전국체전 등은 예외 인정
- ◆ 행사·축제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 및 사후평가로 감축 유도
- ◆ 모든 행사·축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관련 규정 위반시에는 재정 페널티 부여

1 행사·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·운영

- (대상) 행사·축제 관련 행사운영비·행사실비보상금·행사관련 시설비·민간행사보조금 4개 예산과목
 - ※ 행사·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·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·민간경상사업보조·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
- (기준액) '15년 최종예산 수준(11,423억원)에서 원칙적으로 동결
 - 국정과제인 문화융성·외국인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·선정하는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*, 전국체전은 총액한도제에서 제외
 - ※ 문체부로부터 매년 선정 및 지원을 받았으나, 일몰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·축제도 총액한도제에서 제외 가능
 - 2년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·축제는 기준액에 제외 가능
 - 또한, 전국규모의 순회 행사(박람회 등), 시도 규모의 순회 행사(도민체육대회 등)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자부(시군구는 시도)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 가능
 - ※ 총액한도액 산정방법 및 서식은 행자부에서 별도 통보: 8월말까지 시도는 시군구 자료 포함하여 행자부에 보고

②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

- (추진체계) 민간위원회를 구성*하여 신규 행사·축제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사후평가 실시
 - * 조례 제·개정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치단체 내부방침에 따라 민간위원회 구성 가능
 -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「지역축제위원회」, 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」 (15명이내, 민간인 3/4이상)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
- (사전심사) 신규 행사·축제는 위원회에서 사업목적·타당성·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평가 실시
 - ※ 정부 승인 국제행사,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등은 제외 가능
- (사후평가) 모든 행사·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, 예산에 반영
 - (평가대상) 자치단체 주관, 산하기관, 민간보조 등 모든 행사·축제
 - (평가방법)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,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
 - ▶ 5천만원 미만(12,754건, 83.7%)은 상대평가,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되, 미흡 이하에 대해서는 통·폐합 유도

< 상대평가 기준 (안) >

구분 (점수)	매우 우수 (90점 이상)	우수 (89 ~ 80점)	보통 (79 ~ 70점)	미흡 (69 ~ 60점)	매우 미흡 (60점 미만)
등급비율	5%미만	15%미만	60%미만	15%이상	5%이상
예산반영	증액가능	증액가능	유지	10%이상 삭감	미반영

- ※ 평가표 및 측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(행자부예규)을 참고하되, 자체실정에 맞게 평가 실시(행사·축제 평가지표 서식(예시) : 붙임 참조)
- (평가지기)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년도 7월까지
- ⇒ 통·폐합된 건수·금액만큼 총액한도제 범위내에서 신규 행사·축제 신설이 가능하나, 소규모·연례 반복적 행사·축제는 자율 감축 유도

2

「기준경비」 편성기준 개정

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개정 【별표 2】

-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별표2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하면 ‘시’지역에서는 하부조직이 없는 기획·감사 업무담당 4급 실장에게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,
- ‘군’지역에서도 하부조직이 없는 4급 실·과장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개정 필요
 - (현행) 실·국장급(4급) → (개정) 실·국·과장(4급)
- ※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3(시·군·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)에 따라 실·국을 둘 수 없는 시·군·구에 2명의 범위에서 실장, 과장,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음

현 행					개 정				
【별표2】 1. 기관운영 업무추진비					【별표2】 1. 기관운영 업무추진비				
구 분		기준액		비고	구 분		기준액		비고
군	군수	가군 나군	52,800 39,600		군	군수	가군 나군	52,800 39,600	
	부군 수	가군 나군	36,300 27,500			부군 수	가군 나군	36,300 27,500	
	<u>실·국장급(4급)</u>		3,300	4급 실·국장에 한함		<u>실·국·과장(4급)</u>		3,300	4급 실·국·과장에 한함

2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기준 개정(별표 13)

-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능 지역에 대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」 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,
 - 「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로 한정하고 있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지역에 대한 논란이 있음
- 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국제화여비 등을 통한 해외시찰·견학·참관 등을 할 수 있으며,
 - 「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과의 연계성, 언론·정치권의 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,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“국내”로 한정한다고 개정 필요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12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p> <p>300 경상이전</p> <p>303 포상금</p> <p>01. 포상금</p> <p>1. 모범공무원 <u>산업시찰</u></p> <p>가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경비</p> <p>나.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</p>	<p>【별표13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p> <p>300 경상이전</p> <p>303 포상금</p> <p>01. 포상금</p> <p>1. 모범공무원 <u>국내</u> 산업시찰</p> <p>가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경비</p> <p>나.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</p>

3 기타보상금(301-11) 지급 수단 범위 확대 【별표 13】

- 현행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민간인에게 금전인 보상금외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물품 지급*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
- * 예) 우수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급(휴지, 젓가락 등),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차원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등
- 따라서, 반대급부적 경비 지급의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12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p> <p>300 경상이전</p> <p>301 일반보상금</p> <p>11. 기타보상금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<u>보상금</u></p> <p>2~4. (생략)</p>	<p>【별표13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p> <p>300 경상이전</p> <p>301 일반보상금</p> <p>11. 기타보상금</p> <p>1.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<u>보상금 또는 물품</u></p> <p>2~4. (현행과 같음)</p>

3

세입·세출예산의 과목 신설

① 시·군·구 용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

현 행	개 정
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3 용자금 원금수입 01~03 (생략) <u>< 신 설 ></u>	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3 용자금 원금수입 01~03 (현행과 같음) <u>04 시·군·구 용자금 회수수입</u> <u>1. 지역개발기금에서 시·군·구에 용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</u>
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01~04 (생략) 216-05 기타이자수입 <u>< 신 설 ></u>	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01~04 (현행과 같음) <u>216-05 시·군·구 용자금회수 이자수입</u> <u>1. 시·군·구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</u> <u>216-06 기타이자수입</u>

② 지방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 분리

현 행	개 정
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-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.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	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<u>223-01 과징금</u> 1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
<p>4.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 <p>223-02 변상금 및 위약금</p> <p>1. <u>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</u></p> <p>2. <u>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</u>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 <p>223-03 과태료</p> <p>1. <u>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</u></p> <p>2. <u>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 115조의2에 의한 주·정차 위반 과태료</u></p> <p>3. <u>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</u></p>	<p><u>< 삭 제 ></u></p> <p>223-02 이행강제금</p> <p>1. <u>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</u></p> <p>223-03 변상금</p> <p>1. <u>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</u></p> <p><u>< 삭 제 ></u></p> <p>223-04 위약금</p> <p>1. <u>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</u></p> <p>223-05 과태료</p> <p>1. <u>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</u></p> <p>2. <u>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 115조의2에 의한 주·정차 위반 과태료</u></p> <p>3. <u>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</u></p>

③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의 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 신설

- '17. 1. 1.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시,
-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의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 회수수입에 대한 세입과목이 없어, 해당 과목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9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3 용자금 원금수입 01~02 (생략) 713-03 <u>공사공단</u> 용자금회수수입 1.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(지방채) 등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</p> <p style="color: blue;">< 신 설 ></p>	<p>【별표10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3 용자금 원금수입 01~02 (현행과 같음) 713-03 <u>공사공단 등</u> 용자금회수수입 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color: blue;">2.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(지방채) 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</p>
<p>【별표9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01~03 (생략) 216-04 <u>공사공단</u> 용자금회수 이자수입</p> <p>1.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</p> <p style="color: blue;">< 신 설 ></p>	<p>【별표10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01~03 (현행과 같음) 216-04 <u>공사공단 등</u> 용자금회수 이자수입</p> <p>1.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</p> <p style="color: blue;">2.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</p>

④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및 용자금 신설

-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및 용자금을 편성할 세입과목 없으며, 지역발전기금의 규모* 등을 감안하여 신설

* '15년 수도권 3개 시·도(서울, 인천, 경기) 출연금 3,804억원, '16년 용자계획 3,756억원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9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01~05(생략) 224-06 그 외수입 1.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.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수입 3.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 사업비 <u>< 신 설 ></u></p>	<p>【별표10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01~05(현행과 같음) 224-06 그 외수입 1.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.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수입 3.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 사업비 4. <u>지역상생발전기금(재정지원계정)</u> <u>지원금</u></p>
<p>【별표9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01~02(생략) 611-03 지방공공 자금채 1. 지방재정공제회(지방공공자금)에서 지원되는 용자금 <u>< 신 설 ></u></p>	<p>【별표10】 「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」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01~02(현행과 같음) 611-03 지방공공 자금채 1. 지방재정공제회(지방공공자금)에서 지원되는 용자금 2. <u>지역상생발전기금(용자관리계정)</u> <u>으로부터의 용자금</u></p>

2 세출예산 과목 신설 【별표 13】

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과목 세분화

○ 지방보조금절감 항목*은 지방보조금의 무분별한 증액 방지 및 절감 유도를 위해 '11년부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으로 운영

*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
- 다만,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형국책사업이나 국비지원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자치단체 오히려 불이익* 발생

* 총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비중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 인센티브, 증가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여

○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체 및 국·도비보조사업으로 분리하여 민간자본사업자보조(자체재원)와 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로 개정

- 다만 투자적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토록 함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12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·편성목·통계목)」</p> <p>400 자본지출 402 민간자본이전 01. 민간자본사업보조</p> <p>1.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<u>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</u></p> <p>※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(영리행위 허용범위 등)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【별표13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·편성목·통계목)」</p> <p>400 자본지출 402 민간자본이전 01. 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</p> <p>1.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<u>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</u></p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<u>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</u></p>

현행	개정
<p><u>< 신설 ></u></p> <p><u>< 신설 ></u></p> <p><u>< 신설 ></u></p> <p>02. 민간대행사업비</p> <p>1.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</p> <p>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</p> <p>※ 1~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 성적 경비에 한함</p>	<p>02. 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</p> <p><u>1.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</u></p> <p>※ <u>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(영리행위 허용범위 등)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</u></p> <p>※ <u>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편성</u></p> <p>03. 민간대행사업비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사항 명시

- 일부 자치단체에서 「최저임금법」 및 최저임금 구성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
 - 또한,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 발생
- 따라서,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 편성 시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12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·편성목·통계목)」</p> <p>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~02(생략) 03.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.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.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) 환경미화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가지·가로·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,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)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청소·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·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◦ 일당은 직무의 내용, 성격,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,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</p>	<p>【별표13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·편성목·통계목)」</p> <p>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~02(생략) 03.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「근로기준법」상의 각종 수당(시간외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, 연차수당 등) 지급 ◦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<p>나.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(퇴직금) 및 부상치료비</p> <p>다.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</p> <p>라.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, 국민건강보험부담금, 고용보험료 부담금, 산업재해보험료</p> <p>2.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</p> <p>가.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</p> <p>나.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</u></p> <p>※ <u>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.5일까지 결정·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</u></p>

현 행	개 정
<p>04. 기간제근로자등 보수</p> <p>1.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</p> <p>가. 인부임 및 간식비, 부상치료비, 피복비,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,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</p> <p>나.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</p> <p>다.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라.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</p> <p>2.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, 2015.2.10)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(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, 2014.6.30)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04. 기간제근로자등 보수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</u></p> <p>※ <u>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.5일까지 결정·고시하므로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</u></p>

③ 시·군·구 및 출자·출연기관 용자금 신설

- 시·도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시·군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용자하는 용자금에 대한 세출과목이 없음
- 예산규모, 재정자립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용자금 내역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통계 산출의 정확성 제고의 필요성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12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·편성목·통계목)」 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1~02(생략) 501-03 <u>공사·공단 용자금</u></p> <p>1.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<u>지방공사·공단으로 이전되는 경비</u>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【별표13】 「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목그룹·편성목·통계목)」 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1~02(현행과 같음) 501-03 <u>공사·공단 등 용자금</u></p> <p>1.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<u>지방공사·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</u></p> <p>2. <u>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(지방채) 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용자하는 용자금</u></p> <p><u>501-04 시·군·구 용자금</u></p> <p>1. <u>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 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시·군·구에 용자하는 용자금</u></p>

③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(별표 10)

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신설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“13.6 제정)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10】 「세출예산 기능별 분류」 140 국토 및 지역개발(분야) 142지역 및 도시(부문) <u>< 신 설 ></u> (부문에 해당하는 업무) <u>< 신 설 ></u> (정책사업 유형화(예시))</p>	<p>【별표11】 「세출예산 기능별 분류」 140 국토 및 지역개발(분야) 142지역 및 도시(부문) ■ <u>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</u> <u>지속가능한 도시조성</u></p>

4

기타 보완사항

① 지방보조금 적용대상 추가, 예산편성 불가 단체 개정 등【별표3】

-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의 민간보조금의 종류와 동일하도록 운수업계 보조를 「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별표3 지방보조금의 일반원칙 적용대상에 포함
-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한 보조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3년이내로 제한 필요
 - ※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(행자부예규)에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 및 집시법위반 처벌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음
-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관련 내용 수정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3】 지방보조금</p> <p>1. 일반원칙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<u>민간자본사업보조</u></p> <p>③ 예산편성 원칙</p> <p>▶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 	<p>【별표3】 지방보조금</p> <p>1. 일반원칙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적용대상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<u>민간자본사업보조</u>, <u>운수업계보조</u></p> <p>③ 예산편성 원칙</p> <p>▶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</u> - <u>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</u> - <u>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</u> - <u>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</u> - <u>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</u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2e8b57; color: white; padding: 5px;">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>❖ 「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원하는 <u>보조금 (308-06)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</u></p> 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2e8b57; color: white; padding: 5px;">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>❖ 「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원하는 <u>보조금 (308-08)의 경우에는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(행자부 예규)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, 가능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</u></p> </div>

②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 기준액 삭감사례 명시

현 행	개 정
<p>【별표2】 업무추진비</p> <p>7.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</p> <p>① 대 상 :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,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*을 받은 금액</p> <p>* 「지방교부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감액</p> <p>② 삭감기준 :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 5배 이내 기준액 삭감</p> <p>※ 다만, 삭감하는 예산액은 교부세 감액 금액을 초과하여야 함</p> <p>③ 삭감방법 : 익년도 당해 자치단체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*에서 삭감</p> <p>*총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 기준액으로 산정된 금액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【별표2】 업무추진비</p> <p>7.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<u>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'업무추진비 삭감 대상 자치단체 및 삭감규모는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</u></p>

③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시·군 적용군 표준표 조정

- 일부 시군의 인구수, 공무원수, 예산규모, 재정자립도의 변화가 있어, 이를 반영하여 조정 필요

현 행		개 정	
【별표2】 업무추진비 1. 기관운영업무추진비		【별표2】 업무추진비 1. 기관운영업무추진비	
시 (69)	군 (82)	시 (69)	군 (82)
가군 62	가군 69	가군 64	가군 74
의정부, 안양, 부천, 광명, 평택, 안산, 과천, 구리, 남양주, 오산, 시흥, 군포, 의왕, 하남, 파주, 이천, 안성, 김포, 화성, 광주, 양주, 포천, 여주 (23) 춘천, 원주, 강릉 (3) 충주, 제천 (2) 천안, 공주, 보령, 아산, 서산, 논산, 당진 (7) 전주, 군산, 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 (6) 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광양 (5) 포항, 경주, 김천, 안동, 구미, 영주, 영천, 상주, 경산 (9) 김해, 통영, 사천, 진주, 밀양, 거제, 양산 (7)	기장, 달성, 강화, 울주 (4) 연천, 가평, 양평 (3)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정선, 철원, 인제 (7) 보은, 옥천, 영동, 진천, 괴산, 음성, 단양 (7)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홍성, 예산, 태안 (7) 완주, 진안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 (6) 담양, 곡성, 고흥, 보성, 화순, 장흥, 강진, 해남, 영암, 무안, 함평, 영광, 장성, 완도, 신안 (15) 의성, 영덕, 청도, 고령, 성주, 칠곡, 예천, 봉화, 울진, 울릉 (10) 의령, 함안, 창녕, 고성, 남해, 하동,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 (10)	의정부, 안양, 부천, 광명, 평택, 안산, 과천, 구리, 남양주, 오산, 시흥, 군포, 의왕, 하남, 파주, 이천, 안성, 김포, 화성, 광주, 양주, 포천, 여주 (23) 춘천, 원주, 강릉, 삼척 (4) 충주, 제천 (2) 천안, 공주, 보령, 아산, 서산, 논산, 당진 (7) 전주, 군산, 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 (6) 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광양 (5) 포항, 경주, 김천, 안동, 구미, 영주, 영천, 상주, 문경, 경산 (10) 김해, 통영, 사천, 진주, 밀양, 거제, 양산 (7)	기장, 달성, 강화, 울진, 울주 (5) 연천, 가평, 양평 (3)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정선, 철원, 화천, 인제, 고성 (9) 보은, 옥천, 영동, 진천, 괴산, 음성, 단양 (7)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홍성, 예산, 태안 (7) 완주, 진안, 무주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 (7) 담양, 곡성, 고흥, 보성, 화순, 장흥, 강진, 해남, 영암, 무안, 함평, 영광, 장성, 완도, 진도, 신안 (16) 의성, 영덕, 청도, 고령, 성주, 칠곡, 예천, 봉화, 울진, 울릉 (10) 의령, 함안, 창녕, 고성, 남해, 하동,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 (10)
나군 7	나군 13	나군 5	나군 8
동두천, 동해, 태백, 속초, 삼척, 계룡, 문경 (7)	용진, 화천, 양구, 고성, 양양, 증평, 무주, 장수, 구례, 진도, 군위, 청송, 영양 (13)	동두천, 동해, 태백, 속초, 계룡 (5)	양구, 양양, 증평, 장수, 구례, 군위, 청송, 영양 (8)

④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책임읍면동을 법령상 용어로 정비

○ 정책용어인 책임읍면동을 법령*상 용어로 정비 필요

*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별표3

현 행			개 정		
【별표2】 업무추진비 1.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, ②-1, ②-2 (생략) ②-3 읍·면·동장 등 (단위 : 천원/년)			【별표2】 업무추진비 1.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①, ②-1, ②-2 (현행과 같음) ②-3 읍·면·동장 등 (단위 : 천원/년)		
구 분	기준액	비고	구 분	기준액	비고
인구 3만 미만	6,600	적용기준일 : 전년도 9월30일	인구 3만 미만	6,600	적용기준일 : 전년도 9월30일
인구 8만 미만	7,900		인구 8만 미만	7,900	
인구 8만 이상	9,200		인구 8만 이상	9,200	
119안전센터장	1,300	※ 종전 소방파출소장	119안전센터장	1,300	※ 종전 소방파출소장
※ 다만, 책임읍면동은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0%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			※ 다만, 복지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<u>행자부 장관이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·면·동은</u>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0%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		

⑨ 예산편성 참고자료의 “예산의 변경” 내용 정비

-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는 “예산의 변경”으로 제목을 명시하고 있으나,
 - 「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별표14(사업예산 운영기준)에는 “예산의 변경사용”으로 명시하고 있음
- 또한, 예산의 변경사용제한에 대하여 “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”토록 명시하고 있으나,
 - 별표14에는 “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”으로 명시하고 있음
- 따라서, 별표14와 같이 동일하도록 참고자료의 “예산의 변경” 내용을 정비

현 행	개 정
V.예산편성 참고자료 1. 예산운용 실무 4 예산 집행 □ 예산의 변동 나. 예산의 이·전용, 변경, 이체 3) <u>예산의 변경</u> ○ 변경사용제한 :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, <u>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</u>	V.예산편성 참고자료 1. 예산운용 실무 4 예산 집행 □ 예산의 변동 나. 예산의 이·전용, 변경, 이체 3) <u>예산의 변경사용</u> ○ 변경사용제한 :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, <u>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</u>

4. 2017 예산안 편성 일정

- 2016. 8. 24 한도액(안) 통보 및 실국의견 수렴
- 2016. 8. 28 「2016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」 설명회 개최
- 2016. 9. 2 실과소별 1차 예산요구
(법정경비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, 세입예산)
- 2016. 9. 9 예산부서 편성 자체사업 예산요구
- 2016. 10. 12 중앙지원 보조사업 예산요구
- 2016. 10. 12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심의 완료
- 2016. 10. 30 예산안 종합보고서 도지사 결재 완료
- 2016. 11. 9 2016 예산안 확정
- 2016. 11.11 2016 예산안 도의회 제출

※ 2017 예산안 의회심의 일정

- 2016. 11. 13 주요사업 설명자료 및 제안설명서 작성
- 2016. 11. 23 ~ 11. 28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
- 2016. 11.30 ~ 12.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
- 2016. 12. 14 예산안 의결
- 2016. 12. 23 2016 예산 확정·고시